
Policy and Law Report _Vol.11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2.13~ 12.19) -

December 20,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2022년 생명(바이오) 원천기술개발에 5,500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2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 '22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1년 5,382억원 대비 150억원(2.8%)이 증가한 5,532억원 규모이며, ① 핵심산업 분야 집중 지원, ② 선제적 미래전략기술 확보 및 연구·활용 생태계 조성, ③ 국민건강 증진 연구개발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임 중점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주력분야 R&D 집중 지원 -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분야에 1,759억원 투자 ② 미래전략기술 확보 및 연구·활용 생태계 조성 - 차세대 바이오,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 등 미래유망 바이오 기술의 선제적 확보와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484억원 투자 ③ 국민건강 증진 연구개발 확대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감염병, 치매, 뇌질환 등에 대한 예방·치료 원천기술 개발 등 국민건강 증진에 1,289억원 투자 < '22년도 바이오 원천기술개발 투자 계획 >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구분</th> <th>투자액 (억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핵심산업 육성 (1,759억원)</td> <td>신약 분야</td> <td>837</td> </tr> <tr> <td>의료기기 분야</td> <td>590</td> </tr> <tr> <td>재생의료 분야</td> <td>332</td> </tr> <tr> <td>치매극복</td> <td>112</td> </tr> <tr> <td>뇌연구</td> <td>440</td> </tr> <tr> <td rowspan="5">미래기술 육성 (1,111억원)</td> <td>차세대 바이오 기술</td> <td>646</td> </tr> <tr> <td>그린화이트바이오</td> <td>308</td> </tr> <tr> <td>융복합헬스케어</td> <td>157</td> </tr> <tr> <td>혁신기반조성</td> <td>206</td> </tr> <tr> <td>생명연구자원</td> <td>886</td> </tr> <tr> <td rowspan="3">국민건강 증진 (1,289억원)</td> <td>산·변종 감염병 대응</td> <td>737</td> </tr> <tr> <td>창업 및 사업화</td> <td>281</td> </tr> <tr> <td>연구·활용 생태계 구축</td> <td>1,373</td> </tr> </tbody> </table>	분야	구분	투자액 (억원)	핵심산업 육성 (1,759억원)	신약 분야	837	의료기기 분야	590	재생의료 분야	332	치매극복	112	뇌연구	440	미래기술 육성 (1,111억원)	차세대 바이오 기술	646	그린화이트바이오	308	융복합헬스케어	157	혁신기반조성	206	생명연구자원	886	국민건강 증진 (1,289억원)	산·변종 감염병 대응	737	창업 및 사업화	281	연구·활용 생태계 구축	1,373	2021-12-15
분야	구분	투자액 (억원)																																
핵심산업 육성 (1,759억원)	신약 분야	837																																
	의료기기 분야	590																																
	재생의료 분야	332																																
	치매극복	112																																
	뇌연구	440																																
미래기술 육성 (1,111억원)	차세대 바이오 기술	646																																
	그린화이트바이오	308																																
	융복합헬스케어	157																																
	혁신기반조성	206																																
	생명연구자원	886																																
국민건강 증진 (1,289억원)	산·변종 감염병 대응	737																																
	창업 및 사업화	281																																
	연구·활용 생태계 구축	1,373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함 주요 전략으로는 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 등 에너지 시스템 혁신 본격 추진 - (전환)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쉼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기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 - (안보)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新안보 기반 조성 ②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 ○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하 구조전환의 걸림돌 제거 총력 - (기술) ’22년 산업 탄소중립 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案 6.7조 원 등),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 지속 확대 * (’21년)2,130억원 → (’22년)4,082억원, ** ’30년까지 산업R&D의 30% 이상 탄소중립 재편 (’21년 16.7%) - (투자) 기업 노력에 비례해 세제·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추진 - (제도) 「탄소중립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걸림돌 규제 제거 추진* * 소재·부품 등 감축량 측정: (現) 에너지효율만 측정 → (改) 자원효율성도 고려 ③ 탄소중립 신산업 집중 육성 ○ 구조 변화에 맞춰 탄소중립 생태계를 완성할 새로운 산업 육성 - (친환경 인프라)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로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국내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시장 진출까지 연결 - (저탄소 소부장)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함께 국내 생산기반도 확충하여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 - (그린 엔지니어링) 대규모 예타사업·실증을 지원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축적된 기술·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④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전통산업·지역 맞춤 전략으로 소외없는 포용적 혁신 달성 - (중소·중견) 「(가칭)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 * 청정생산지원센터(친환경산업법) 기능 확대 → 기업 지원 ‘single window’로 활용 ** 클린팩토리 보급(22년 누적 750개, 25년까지 1,800개), 넷제로 유망기업 응자(22년 1,200억원)	2021-12-10

부처	내용	일시
	- (전통산업)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22년) 개소 등을 통해 산업재편 예측력을 제고하고 선제적 종합지원 추진 - (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대응 * 「탄소중립 기본법」 근거 → 지정지역에 산업·고용·지역경제 등 분야에 범부처 지원 ** (既) 산업위기지역 단일 → (改)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신설 (22.2월 시행) ⑤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특별법)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목표·원칙 공고화 * 주요 내용: ①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명문화, ②전문기업 지정·육성, ③저탄소 제품·기술 시장조성, ④규제특례 근거 마련, ④취약산업·기업지원 근거 마련 등 ○ (정책보완) 既 구축 탄소중립 민관 협의체 등을 활용해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 구축	
고용 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前 추진현황 점검 및 추가 보완대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2.1.27.)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50억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지속 보급하고, 특히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②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③ 산재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촘촘한 협업체계 구축 - '21.11월부터 시행 중인 지자체의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 중앙정부와 협업 강화 - 지역 관내 사업장을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가칭)산업안전지도관’ 신설 검토 및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④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 집중 추진	2021-12-15

부처	내용	일시
	- 특히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및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과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예방에 필요한 지원 확대 - 건설기계 안전장비(충돌감지기) 및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기술(자동화기기·AI센서)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 강화 계획 ⑤ 근로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 검토·추진	
금융위원회	•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함 최근 금융은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데이터 혁신 인프라 구축 -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 점차 확대 - 중소·소상공인 및 新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를 보다 확충하여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 접근성 제고 ② 금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 제고 강조 -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AI 기술 활용 적극 지원 -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two factor 인증* 등 안전성 확보 *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지식·소유·특성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 -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 정비	2021-12-15

부처	내용	일시
	③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 적극 모색 -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 * Open Finance :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자금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여타 업권 · 상품 추가, 기능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 -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 추진 -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모색 - 다만, 네트워크 효과·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 (예시) 현행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 반영 ④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 등 보고절차 단순화 - 사이버 보안에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을 도입하여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 강화 * Zero Trust: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이나 사용자가 없다고 보고 내부 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 - 한편,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제도화 논의에 참여	

부처	내용	일시
조달청	• 조달심사·평가 공정성 강화조치 시행 조달청은 조달심사·평가위원의 평가부터 교섭,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함. 이번 개선방안은 조달심사·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공정한 조달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원 간 과도한 점수 차이 발생 방지를 위해 평가위원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10% 이상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사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나라장터에 공개하기로 함 ② 평가 참여 위원 수를 12~15명으로 확대하고 최고·최저 점수 2개씩을 제외하여 평가점수에 일부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방침 * 현행규정 : 1억원 미만(8명), 1억원~50억원(8명이상), 50억원이상(9명이상) ③ 평가위원단 규모를 향후 3만명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고 연간 평가 횟수 제한, 해당 수요기관 평가위원 제외, 직군간 균형있는 평가를 위한 교수·공무원·공공기관 비율 조정 등 교섭방식 개선 ④ 불공정 평가 의심사례 적발기준 및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의 점수 편차, 업체 편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위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2021-12-15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관세법 시행규칙」 (2021.12.13. 시행)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외국인과의 합작비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였음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24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1-12-13
산업통상자원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16. 시행)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의 범위를 차세대 공정기술 관련 업종으로 확대하고, 뿌리기업 확인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 이에 따라, 뿌리기업 확인과 그 취소의 절차·방법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절차 (제17조의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하고,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뿌리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제23조의2 ~ 제23조의4 신설) - 우수한 근로·복지환경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뿌리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021-12-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③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 확대 (별표 1 및 별표 2) - 뿌리기술에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을 추가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뿌리산업에 추가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산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함 ④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취소의 기준 (별표 3) -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취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산업통상 자원부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12.16. 시행) 외국의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생산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농림축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세관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79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 이에 따라,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세관장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려는 것임	2021-12-16
환경부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16. 시행)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연구개발, 실증화와 사업화 등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3호, 2021. 6. 15. 공포, 12. 16. 시행)됨 이에 따라,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제2조) - 녹색산업을 환경개선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 산업,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수열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관련 산업 등으로 정함	2021-12-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녹색연관산업을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 정함 ②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제6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연관성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지원의 대상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로 등 교통시설, 용수·가스공급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④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요건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과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⑤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 (제12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연구지원 기반 확보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2022.1.15. 시행 예정) 과태료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부과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제재 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별표4 제1호나목 단서조항 신설)	2021-12-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2021.12.14. 시행)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낮추는 내용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021-12-14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u>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u>」 외국환거래법령·제도의 개편을 위해 관련업계·기관으로부터 규제 개선 의견 중,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함과 함께, 외국환거래규정 내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 9-5, § 9-9, § 9-15의2) -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지분 양수도시, 양도인(투자 청산인)의 7영업일 내 사후보고 의무를 3개월 내 사후보고로 완화 - 해외직접투자자가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한 경우에는 보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유예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 - 해외직접투자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및 청산보고서 제출시 현지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의무를 삭제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자 설립·운영현황보고서 제출의무를 한은과 금감원에서 한은으로 일원화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대상 투자자를 누적투자금액 200→300만불 초과로 완화 ② 규정의 정합성 제고 및 기타 외환 모니터링 필요성 대비 다소 과도한 규제절차 완화 (§ 2-29, § 4-7, § 5-2, § 5-4, § 9-24, § 9-40) - 해외이주예정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비 송금 기한(現 3년)의 연장을 허용 - 재외동포가 해외 송금 가능한 자기에 본인명의 예금·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취득한 원화대출금에 더해 증권사·보험사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까지 허용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중재에 따른 비용을 상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계신고 예외 인정 - 상계·제3자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 신고 관련, 한은 뿐 아니라 외국환은행에 자본거래 신고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 인정 [단,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5-11), 기간초과 지급(§ 5-8)은 제외] - 해외지사의 상호명·소재지 변경시 사후보고 기한(3개월)을 삭제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이후,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후관리보고서 제출 곤란시 제출의무 유예 가능 ※ 의견 제시기간 : 12/16(목)~12/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로 제출	2021-12-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염병 등 장기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무선국 검사 시기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5G망 조기구축 및 이동통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와 장비성능 개선에 따른 검사업무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검사수수를 개편함 이에 따른 검사원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이동통신 무선국 공용·환경친화 명령 이행률과 전파사용료 감면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보행로 등이 없어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터널 등에 설치된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기자재나 타법에 의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적합성 평가 대상 기자재의 경우에 적합성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 12/17(금)~12/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기반과)로 제출	2021-12-17
중소기업 벤처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밀유지계약 도입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1호, 2021.8.17. 개정, 2022. 2.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벌점의 부과기준 개정 (안 제5조의4 및 [별표] 개정) - 법 제21조의2 신설 및 제27조 제7항 개정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5조의4) - 시행규칙 별표(벌점의 부과기준)의 범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법 제21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	2021-12-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비치서류의 확대 (안 제11조) - 법 제39조는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법 제21조의2 신설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가 도입됨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수·위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추가 ※ 의견 제시기간 : 12/13(월)~'22년 1/2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지난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임을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음 이처럼 최근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가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주요 지표로 강조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ESG 정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단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명시하고 있어, 이는 ESG를 고려한 투자에 장애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2021-12-14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각종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이용자가 공직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여론을 주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선거운동기간 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댓글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 및 이미 게시되어 있는 불법선거운동정보를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불법정보에 대하여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 등)	2021-12-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12인)」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의무가 있는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9월 중소기업계 제안에서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준비 기간, 인증취득·유지 비용부담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증취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과제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 부담을 줄여 정보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6 신설) 아울러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제1항, 제2항3호 개정 등)	2021-12-1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3인)」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당근마켓 같은 온라인마켓은 개인 간 중고거래 또는 이용자 사이의 거래가 많아 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2021-12-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2021-12-15
환경노동 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의 항목 추가 등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포장재의 두께, 색상 및 포장무게비율*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포장무게비율: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2021-12-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 등 (안 제9조의5 신설) -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③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 추가 (안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추가함 ④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 (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 등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 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임이나 요금 책정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임 반면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조정이 가능한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시장을 독점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요금(호출비)을 대폭 인상하려다 여론 등에 밀려 무산됨 택시서비스(호출비) 요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 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 및 승객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19, 제85조제1항제10호·제32호의3 및 제94조의제1항)	2021- 12-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u>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6인)</u>」 현행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 도시 경관 및 고도관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에서 개별법 상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가로구역별로 지정·공고된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완화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등 특례규정의 적용 및 집행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높이의 완화에 관한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60조제4항 신설)	2021- 12-16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별첨1】참조		
국회사무처	12/24(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9호 발간	
국회도서관	12/20(월) 10:00	「한·일 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시대 해외 입법정보 제공	Webex
	12/21(화) 10:00	제24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 주요국의 AI 관련 입법동향	ZOOM
	12/22(수)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2호 발간 - 2022년 세계경제 전망 등	
예산정책처	12/21(화)	「NABO 재정동향&이슈」 제18호 발간 - 국가재정상태 진단 및 주요 재정현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12/22(수)	「NABO Focus」 제40호 발간 -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전망	
입법조사처	12/20(월) 14:00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공동학술대회 개최	
	주중	「이슈와 논점」 발간 -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지식재산)의 가치창출	
	주중	「NARS 현안분석」 - 「형사사법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주중	「NARS 입법·정책」 -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12/20(월)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한반도 종전선언의 논의 동향과 주변국의 입장	온라인
	12/21(화)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인터넷 플랫폼 규제입법 시 국제법적 문제	온라인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입법조사처	12/21(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신남방정책 평가와 향후과제	온라인
	12/23(목)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현황과 과제	온라인
	12/23(목) 16: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디지털 뉴스 미디어 관련 현안 및 입법 정책 과제	온라인
미래연구원	12/23(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4호 발간	

[별첨1] 제392회 국회 임시회 상임/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2/21(화) 14:00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문체위)	-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 논의의 건 - 미디어 생태계 개선 관련 「신문법」 및 「정보통신망법」 논의의 건
국방위	12/22(수) 09:30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국토위	12/22(수) 10:00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등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20(월) 14:00	관광 서비스산업 위기극복 세미나 - 진단과 해법	박정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12/20(월) 14:00	NFT 정책 토론회 -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모색	노웅래, 김병욱, 김영진, 이상헌, 이정문 의원실	유튜브
12/20(월) 14:00	인구감소, 3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명수, 서범수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21(화) 10:00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진료의 미래	강병원, 전용기 의원실, 한국원격의료학회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21(화) 14:00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상민, 서범수 의원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외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2/21(화) 15:00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김의겸 의원실, 한국토지정책학회 외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2/22(수) 10:00	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세미나	박재호 의원실, 경찰청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1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12/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1호 발간 -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	
	12/14(화)	「현안, 외국에선?」 제25호 발간 - 일본의 의회 선거제도와 헌법 개정 논의	
입법조사처	12/13(월)	「NARS 현안분석」 제226호 발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12/13(월)	「이슈와 논점」 제1901호 발간 -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13(월) 09:30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 포럼 -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	이태규 의원실, 한국벤처창업학회 외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4(화) 09:15	메디컬 헬스푸드 의 제도적 육성 방향 - 초고령시대 고령친화식품 도입 필요성과 더불어	전혜숙 의원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